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적극적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도농복합 신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상시화 근거 마련 (안 제3조)

○ 실·과·단 설치 조항

- 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 → 산업단지개발추진단

나.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의 한시적 운영기간을 정한 부칙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1조

○ ‘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제외대상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[기간 : ‘18. 7. 5.~ ’18. 7. 25.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은 2013. 3. 11,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로부터 3년간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하였고 그 후 산단 조성,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유로 2번의 연장 승인을 통하여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, 행정기구 관련 규정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으로 자체적으로 3개 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계적인 기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지 않고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체계적인 기업지원 및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